#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38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박찬대·조응천·김수흥

정일영 • 이성만 • 신동근

김교흥 • 허종식 • 유과석

송영길 · 김상희 · 윤영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제공 정보 이외에 형제·자매 수 등 추가적인 가족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추가 정보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약 15만 명(2020년 1학기 기준)의 신청자가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장학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 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를 "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u>.</u>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1
받으려는 사람과 <u>그 부모 또</u>	<u>그</u> 부모, 형
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법원	<u>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u> -
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	
교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